

# 무형문화유산의 계보

로데스 아리즈페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교수, 전 유네스코사무총장보

“동시대인이자 초현대인들은 점차 국가나 물리적 공간보다 새로운 지식과 창의성, 변혁적인 진취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인위의 환경을 창출해 내며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끊임없이 기술 중심으로 되어 간다.”

조르주 발랑디에, 『위대한 시스템(Le Grand Systeme)』 중에서<sup>1)</sup>

장벽이 무너지고 관습이 변화하는 지금의 새로운 시대에도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의미, 정서, 기억 등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부딪치며 흘러가는 이 세계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향해 돌진하지만 동시에 의미나 타인과 공유한 경험을 고수하고 싶어 한다. 왜 그런 것일까? 이러한 공유는 열린 세상에서 자아감과 정체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한 참조 대상을 상실하게 되면 심리·정치 측면으로 격렬한 여파를 미치며, 이는 오늘날 세계에서든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세계화의 혼란 속에서 회원국들이 살아 있는 문화의 보호를 위한 조치 권한을 유네스코에 주게 된 것도 이러한 상실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주문이자 흥미진진한 지식·정치성 미로에 이르는 요청이었다. 1990년대 초 세계 정치권에서 ‘문화 전환’이 일어나고 표현에 대한 주장이 부상함에 따라 ‘세계

1) 조르주 발랑디에(Georges Balandier), 2001, 『위대한 시스템(Le Grand Systeme)』, 파리: Librairie Arthème Fayard.

화(worlding)', 유산, 정체성의 상징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흐름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국가, 소수문화 공동체, 소수민족 집단, 이주민 공동체, 최근에 생겨난 문화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집결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스스로 위치를 재설정하기 시작했다.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친 끝에 민족국가, 문화 전승자, 창작자, 이해 관계자 간의 관계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개념의 제시를 성공시켰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과거는 주로 인공 건축 환경, 피라미드, 기념물, 지속된 자연환경 속에서 간직되었다. 살아 있는 유산은 태양의 운동과 함께 변화했지만 문화유산은 고정불변의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아침에 선보인 어느 춤 공연에 과거가 존재하고, 같은 날 오후에 다른 집단이 공연하는 같은 춤은 미래가 된다. 실제로 신기술과 세계화가 창조와 변형 사이의 일정을 압축함에 따라 현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좁은 시간의 틈새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가 축소됨에 따라 '문화유산'의 개념은 공동체의 합의를 얻었기에 정당성을 얻은 탐구형(heuristic) 뒷에 잡힌 한 순간이라는 사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명해진다. 특정한 무형유산 관습을 창조하는 공동체는 히말라야의 소규모 인종집단일 수도 있고 자메이카의 종교집단 라스타파리안(Rastafarian)이나 미국의 로스엔젤레스와 시카고, 프랑스 파리 등 해외에 거주하는 멕시코 '판당고(fandango)' 연행자 공동체일 수도 있다. 오늘에서 내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살아 있는 문화유산의 중심 과정임을 감안할 때 유산의 정의와 보호 방식은 그 유산을 실행하는 여러 공동체 내부, 유산을 체계화된 것으로 인정하는 정부 및 국제기관들과의 진지한 지식·경험·정치 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최근에 나온 한 간행물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물질문화유산을 특이성(singularity), 고유성(uniqueness), 보편성(universality), 상호연관성(interconnectedness), 국제협력성 등의 속성을 지닌 것으로 정의했다.<sup>2)</sup> 이에 반해 무형유산의 주된 특징은 연행과 교류의 역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의 규범 및 운영 절차는 특이성과 복수성(특정 관습에 대해 여러 다른 문화집단이 소유권을 주장), 고유성(어떤 관습의 지역·문화·존재성의 기원을 두고 문화집단들이 의견 충돌을 일으킴), 지역성과 보편성(지방의 일부 집단이 자신들의 관습이 대규모 지역에 걸친 국제 활동에 관련되면서 도용되고 있다고 강력하게 항의)의 역학에 대처해야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무형유산에는 마치 문화가 확고하게 고정된, 실제인 것 같은 '상호연관성'이

2) 유네스코, 2012,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세계유산비평(World Heritage Review)』 65호, 2012년 10월. Whc.unesco.org/en/review/65/, 2012년 5월 20일 확인.

없다. 이보다는 뿌리 깊게 되풀이되는 문화 교류라는 '상호문화성(interculturality)'이 존재한다. 케시의 제마엘프나(D'Jemaa el Fna) 광장에서 보는 이야기와 곡에 공연이 수도 라바트나 프랑스 파리의 연극무대로 옮겨진다면 그것이 여전히 같은 관습일까?

아이카와 노리코가 자신의 글에서 설명하고 있듯 이 모든 문제는 유네스코에서 1972년, 1973년, 1989년, 1995년에 거듭 마련된 무형유산 논의가 처음 시작될 무렵부터 존재했다. 1990년대에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처리해야 하는 결정은 이전에는 '민속', '문화 전통', '풍습'이라는 용어로 불리며 극도로 복잡하게 분포된 여러 살아 있는 관습을 토대로 한 국제 협약이 과연 사법 상으로 강력하며 규범 성격의 국제 협약이란 틀 안에 '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당시 유네스코에서 문화 분과 사무총장보를 맡고 있던 필자는—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사회인류학자로서 이 같은 시도에 대해 항상 느껴 오던 모든 우려와 불안에도 이 협약의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필자가 우려한 이유의 하나는 확연히 고조되고 있던 두 요소 간의 긴장이었다. 하나는 다문화주의와 '문명의 충돌'에 관한 정책토론에서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갈수록 도구화되던 문화 개념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학자 대부분이 공유하던 인식으로 조르주 발랑디에가 다음과 같이 탁월하게 요약한 문제였다. "동시대인이자 초현대인들은 점차 국가나 물리적 공간보다 새로운 지식과 창의성, 변혁적인 진취성의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인공 환경을 창출해 내며 그 안에서 인간의 존재가 끊임없이 기술 중심으로 되어 간다."<sup>3)</sup>

이 장에서는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의 기원을 '현장(chantier)'의 창조라는 맥락으로 분석해 보기로 하고, 이 현장에서 우리는 인류의 살아 있는 연행을 이해하기 위한 용어를 꾸준히 만들어 내야 한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상티에(chantier)'라는 프랑스어 단어는 떠오르고 있는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한 곳이며, 이러한 창조성은 과거의 과학·정치 관점에서 여전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자기성(selfhood)을 유지하려는 기본 욕구와 함께 권력관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억압에 맞서고 이제 낫설어진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려 하는 시도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민족국가, 문화 전승자, 창작자, 문화 이해관계자 간의 문화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은 국제간의 정당성이 부여된 새로운 개념을 마련했다. 이 개념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를 이어지는 글에서 설명할 예정인 가운데 이는 필자가 그 '의사결정' 과정과 2003년 협약 제정 과정에서 열

3) 조르주 발랑디에, 『위대한 시스템』

린 여러 회의에 참석하는 특권을 누린 덕분이다.<sup>4)</sup>

먼저 언급해 두고 싶은 말은 무형유산은 문화 개념으로부터 얻은 유산, 즉 다의성(polysemy)을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유산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자.

### 창의력과 정치의 깊이 및 굴곡

19세기 말 서유럽 국가들과 뒤이어 북미,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산업자본주의가 부상함에 따라 경제 개발과 역사문화 재배열의 다양한 조합이 최초의 세계화(‘몽디아시옹 mondiation’<sup>5)</sup>)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는 곧 서로 다른 문화를 보유한 여러 민족에 관한 세계 담론이었다. 19세기 맥락에서 직선상의 진화 체계를 토대로 삼은 이 담론은 다양한 모든 역사 및 지역 문화의 융합과 단일한 문화 산물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극히 도식화해서 표현하면 당시 이 문화의 선택 안은 산업화 사회들 자체가 직면하고 있던, 과학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창조하느냐 아니면 독특한 지역 언어와 문화 공동체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느냐 하는 선택을 반영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언급한 이유는 이러한 역사 논쟁의 몇몇 주장이 지금도 무형유산의 ‘상티에’를 둘러싸고 다른 표현 및 담론의 틀을 빌려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반에 있는 ‘문명’과 ‘문화(kultur)’라는 두 정치철학의 충돌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민족(volk)’ 수호의 미명 아래 잔학 행위를 저지르던 독일 나치정권은 민족이라는 말에서 그들에게 정치의 우위성을 가져다주고 달갑지 않은 타 문화와 지역을 말살할 수 있게 해 줄 특이성과 고유성을 감지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2차 대전을 통해 이 두 철학이 충돌한 이후 문화의 중요성이 전례 없이 부각되었다. 그 결과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시작되는 전쟁’을 종식시키자는 선언과 함께 유네스코가 창립되어 국제 정치가 감독하는 열린 무대에 상상의 산물과 문화를 올려놓고자 했다.

앙드레 말로(Andre Malraux)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이 새로운 관점에 담론의 형태를 부여했다. “... 지난 25년에 걸쳐 다원주의가 탄생했다. 정서, 사회 인

4) 필자는 유엔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 위원(1992~1996년)과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1994~1998년)를 역임했으며, 무형유산보호협약 제정을 위한 각종 회의에 참가했다(1999~2002년). 로데스 아리즈페, “국제외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인류학자(An Anthropologist as Decision-making Participant in International Diplomacy)”, 출판 준비 중.

5) 여기서 ‘mondiation’이라는 용어는 탈식민지 담론이 아니라 역사상 특정한 시기에 한 사회를 지배하는 세계관의 탄생을 가리킬 목적으로 필리프 데스콜라(Philippe Descola)가 사용한 용어와 뜻이 같다.

식, 관습, 예술 등 측면에서 진보 개념이던 오래된 문명의 개념은 문화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은 곧 개별 문명이 자체의 가치 체계를 만들어 냈으며, 이 가치 체계들은 동일하지 않고 반드시 서로를 모방하지는 않았다는 개념이다.”<sup>6)</sup> 말로는 이러한 원리를 토대로 1950년대의 탈식민지화 세계를 위한 새로운 세계화를 고안했다. 유엔 내에서 ‘경제 개발’이 미래의 청사진으로 된 1950년대 동안 문화는 ‘문화 재조정’을 위한 수단 또는 ‘빈곤문화(culture of poverty)’<sup>7)</sup>를 근거로 삼아 발전의 장애물로 개념화되었다. 이 용어는 멕시코의 도시 이주민들을 추적 조사한 미국 인류학자 오스카 루이스(Oscar Lewis)가 최초로 사용한 것으로, 원래는 그가 산업화 및 도시화의 결과물이라고 설명한 ‘빈곤의 하위문화(subculture of poverty)’를 의미했다는 점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sup>8)</sup> 이런 의미에서 무형유산을 생각할 때는 조사 대상이 된 문화 인식이 역사상에서 유래되었는지, 소외되고 빈곤한 경제 환경에 놓인 집단이 최근의 근대에 만들어 낸 것인지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20세기 후반에는 인류학과 민속학이 민족지학상의 연구를 이끌면서 특히 원주민(토착민)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민족의 창의력을 면밀히 기록했다. 근대화의 물결이 지역 문화를 예로부터 내려오던 옛 체제로부터 분리시킴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과정을 상쇄하기 위한 계획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에 사회혁명을 겪은 멕시코의 경우 정부지원 연구와 문화정책이 고고학 및 인류학 연구 사업을 선두에서 이끌었다. 예를 들면 탁월한 토착민 문화를 박물관에 전시하여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지학 구조(Ethnographic Rescue)’ 사업을 시행했다. 이러한 문화 제도와 정책은 멕시코시티에서 유네스코 제2차 총회가 개최된 1948년 당시 갓 출범한 유네스코 협의체에도 알려졌다. 이처럼 토착문화를 박물관에 소장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보전하려고 노력한 시대는 1995년을 기점으로 막을 내렸다고 말할 수 있다.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1995년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 대표단들은 문화분과 사무총장보로 새로 부임한 필자에게 차례로 찾아와서 ‘살아 있는 문화’와 관련된 박물관이나 무인(無人) 역사도시 센터를 그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문화에 집중시키는 계기가 된 다른 세 가지 과정도 있었다. 첫째는 필자가 연설에서 즐겨 말하듯이 “문화 소통의 세계화는 경제 세계화보다

6) 유네스코, 위의 글: 80.

7) 로데스 아리즈페, 2008, “문화제도의 사상사(The Intellectual History of Cultural Institutions)”, 마이클 월턴(Michael Walton) & 비자엔드라 라오(Vijayendra Rao) 편집, 『문화와 공공행동(Culture and Public Action)』, 팰로앨토: Stanford University Press.

8) 로데스 아리즈페, 위의 글.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물론 이에 비해 우리 인류학자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이러한 과정을 분석하거나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두 번째 과정은 영국에서 연구를 시작해 다른 국가들로 확대된 뉴라이트(New Right)의 부상이다. 이 운동은 ‘문화’, ‘국가’, ‘민족’이라는 용어를 그들의 목적에 따라 재정의하고 임의로 사용하는데 몰두했다(Seidel, 1985).

세 번째 과정으로는 문화로 다양한 지역을 하나로 결합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인종차별 반대운동과 민족해방 투쟁의 역사로부터 탄생한 많은 개발도상국은 구조 조정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특정하게 적용하고, 문화를 국제 개발에서 정치 참여 및 평등을 증진하려는 그들의 요구 제시에 중요한 기치로 삼았다.

이처럼 서로 다른 관점들이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부와 시민사회 조직, 국제 문화사업 담당자 간에 행해지고 이들 사이에서 인류학자들이 참여한 유네스코의 문화 관련 논의에 어려움이 많은 것도 어찌 보면 당연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체가 동의한 커다란 도전 과제는 새로운 시공간의 준거 틀에서 사람들이 문화 변화의 급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히 문화 지침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이었다. 이것은 앞으로도 인류학이 활발하게 지속해야 할 과정으로, 인류학은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 문화의 공간 속에서 복잡하게 얽힌 의미망이 지닌 속성에 대해 제한된 지지를 넘어 새로운 성찰을 적극 해야 한다.

1990년대에 문화는 세계 자본주의를 위한 새로운 정치 활동에서 국제 정책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 최소한의 국가 역할을 했다. 역설이게도 이런 현상은 인류학자들이 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심지어 이를 보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을 때 나타났다. 해석인류학(interpretive anthropology)은 이 용어를 ‘해석의 해석’이라는 용어 속에 묻어 버렸다(Geertz, 1973). 해석 이론들은 의미와 주관성을 강조하면서 접근 방식을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이끌었다. 민속방법론과 기호학 및 포스트모더니즘 연구는 해석 이론을 텍스트 분석 안에 녹여 넣었으며, 탈식민지 연구는 전통의 인류학 연구 이면에 자리한 푸코식 의미의 권력 구조를 파헤쳤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다문화 도시 환경으로 사람들이 유입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은 ‘단절된 역사와 민족 혼합’의 맥락에서 문화를 제한되고 고정된 존재로 볼 수 없게 되었다(Hall, 1993:356). 이에 따라 문화는 ‘논쟁의 장’으로 재정의되었다(Cohen, 1974). 수많은 학문 분야의 ‘문화 전환’으로 인해 문화는 민족지학에 뿌리를 둔 방법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거대 담론을 믿는 불가능한 상황에 녹아들게 되었다. 이 개념을 둘러싼 회의론이 크게 불거진 가운데 1998년 크리스토프 브루만(Christoph Brumann)은 문화의 유용한 개념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를 논한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Brumann, 1998).

공교롭게도 문화 개념 발견의 유용성에 관한 회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학계에 팽배하던 1990년대에 왜 문화의 개념이 개발주의 정치에서 우위를 차지했는가에 관해서는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 문화는 손실이 가시화될 때 정치성을 띤다

‘문화 발전’은 1946년 제1차 총회에서 유엔의 목표 가운데 하나로 언급되기는 했지만 이 개념이 범 세계 차원으로 수용된 것은 1969년에 유네스코 문건 ‘문화정책: 예비연구(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가 나오면서부터였다.<sup>9)</sup> 이 문건을 통해 문화 발전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성의 실현과 경제·사회 개발, 특히 언어 교육 프로그램과 문화를 연결하기 위한 기준이 공식 권고되었다. 문건의 끝부분에서는 언어교육 프로그램과 ‘문화 발전’을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총체’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지침의 하나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 예비 제안서가 나온 후 1970년에 문화정책에 관한 제1차 정부 간 회의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개최되었고, 이후 10년간 문화정책에 관한 일련의 문건들이 출간되었다.

이 분야의 국제 활동은 1982년 멕시코에서 열린 문화정책에 관한 정부간회의(몬디아쿨트 Mondiacult)에서 절정에 이르렀으며, 이 회의에서 문화정책 기본 지침이 마련되었다. 1950년대부터 프랑스가 국가 문화정책 개발 분야를 이끌어 왔지만 이 회의에서는 ‘사회 다원주의’에 기반을 둔 ‘내생 발전(endogenous development)’<sup>10)</sup>의 증진 방법에 관한 문화정책 수립에 개발도상국들이 적극 나섰다. 탈식민지화 이후 국가 및 지역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권리 주장이 이어지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77그룹(Group of 77)이 유네스코를 선도 기관으로 삼아 ‘세계 문화발전 10년(World Decade for Cultural Development 1988~1997)’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기간에 조직된 활동은 많은 경우 민족지학 연구 장려와 민속학 및 민속예술 관련 국가 기록보관소 설립에는 중요하게 기여했지만 대개는 관련 행사와 축제만 되풀이하고 발전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Recommendation on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Cultures and Folklore)는 문화 발전이라는 이 새로운 문제가 세계무대

9) 유네스코, 1969, “문화정책: 예비연구”, 파리: 유네스코.

10) 이 개념은 몇 세대에 걸친 라틴아메리카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당시 박사후 과정생으로 있던 필자는 멕시코에서 갓 설립된 여러 아메리카 원주민 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아메리카 원주민과 그들 문화의 보호에 관한 글을 썼다. 로데스 아리즈페, 2014, 『로데스 아리즈페 솔로서: 멕시코 인류학의 선구자(Lourdes Arizpe Schlosser: a Pioneer in Mexican Anthropology)』, 하이델베르크: Springer.

에 설 수 있는 장을 마련했으나 문화와 발전 논의 추진력은 더 크게 붙어넣지 못했다. 그 결과 1992년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들을 필두로 한 유엔 회원국들은 세계문화발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Culture and Development)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빙된 당시 필자는 20년간 문화정책을 연구한 경력이 있었다.<sup>11)</sup> 로돌포 슈타벤하겐(Rodolfo Stavenhagen)이 여러 인류학자 및 저술가와 함께 도시문화를 포함한 지역문화 보호를 위한 정부 선도 프로그램을 만든 1979년에 필자도 박사후 과정생으로 이 사업에 참여했다. 우리는 멕시코가 고고학과 민족지학 자료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전통 장인의 공예품을 활발히 지원한 국가이니만큼 그러한 자료와 공예품의 생산자들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그들의 지역문화를 존중하고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5년에 필자는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국립민속문화박물관장으로 임명되었다. 이 박물관에서 열린 전시는 대부분 새로운 전시학을 도입하여 토착 및 도시 문화 전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서 그들의 문화와 공연의 시각 전시를 구성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찾아와 이 전시를 관람했다.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전승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화를 안정시킬 수 있게 하고, 이런 방향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죽어 가는 문화 또는 직업 성격의 전통을 구제하는 것이었다. 1988년 필자는 이 박물관을 떠나 세계 인류학·민속학 연맹(International Union of Anthropological and Ethnological Sciences)의 회장직에 올랐다. 1992년에는 세계문화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초청을 받았고, 1994년에는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에 임명되었다.

### 무형유산을 위한 토대 마련

1992~1995년에 유엔 문화발전위원회는 세계 각지에서 개최한 아홉 차례의 회의 등 여러 활동으로 풍부한 아이디어·철학·정치적 저류를 국제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었으며, 놀라게도 우리는 그 결과를 한데 모아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했다.<sup>12)</sup> 유네스코는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 후속 기획으로 회의를 다섯 번 개최하여 이에 앞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에서 마련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11) 1979년 로돌포 슈타벤하겐은 일단의 인류학자 및 저술가들과 함께 도시문화를 포함시킨 지역문화 보호를 위한 정부 선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우리는 수년에 걸쳐 ‘민속문화(culturās populares)’에 관한 정책 개념을 마련했다. 1993년에는 국립민속문화박물관(National Museum of Popular Cultures)이 설립되었다.

12) 당시 필자는 이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동시에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1994~1998)를 지내고 있었다.

Index)를 보완할 수 있는 문화발전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자 노력했다. ‘문화개발’, ‘문화의 자유권’, ‘문화다양성’ 지표 등 이 일련의 회의에서 논의된 개념들은 발전 맥락에서 인정되고 보호되고 재창조되어야 할 ‘살아 있고’, ‘유의미한’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사업을 수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화는 결국 그것이 지닌 다의성과 그 밖의 불가해성으로 인해 우리가 문화에 대해 마련한 그 모든 개념의 틀을 벗어나 버렸다.

‘전통문화’와 ‘민속’은 대부분의 논의와 국제간 사업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주요 용어였지만 ‘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또한 ‘무형문화’라는 표현도 각종 회의와 유네스코 문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카와 노리코-포레는 유네스코의 프로그램 사무관으로서 조르주 콩도미니(George Condominas)를 위시해 전 세계 인류학자들과 함께 각종 프로젝트, 세미나, 국제회의를 진행했다. 아이카와가 이 책에 실린 자신의 글에서도 정확히 기록하고 있듯이 이는 이 분야와 관련해 더욱 강력한 규범을 도구로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유네스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 업무에 한창 적응하고 있던 1995년 당시 필자를 찾아온 아이카와는 민속학자로서 전통문화 분야의 국제 도구 개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나는 그 즉시 수락했다.

우리는 문화분과의 차기 프로그램에서 이 주제 분야를 다룰 회의를 여러 나라에서 다섯 차례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당시 필자는 세계문화발전위원회 보고서의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일에 골몰해 있었고, 우리 두 사람은 인간개발지수와 같은 선상에서 문화와 발전에 관한 지표나 지수를 개발하는 데 큰 관심이 있었다.<sup>13)</sup> 1996년에 개최한 문화발전 지표에 관한 한 회의가 기억나는데 이 회의에서 우리는 살아 있는 문화유산을 지칭할 용어를 몇 가지 구상하기도 했다. 참여자 가운데 인류학자들은 ‘표현 문화(expressive culture)’라는 표현을 제안한 반면에 ‘창의 유산(creative heritage)’, ‘철학 유산(philosophical heritage)’, ‘지식 유산(intellectual heritage)’, ‘자기표현 문화유산(self-expressive cultural heritage)’ 같은 제안도 나왔다. 이보다 더 거친 표현들은 제안 직후 곧바로 배제되었다. 그날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세계유산목록의 문화유산과 연결 고리를 만들어 줄 ‘물질-무형’의 속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기술 대상이 되는 유산의 구조 또는 변환 성격을 담아내기 위한 ‘형식-표현’의 속성이었다. 언어에 따라

13) 인간개발지수의 고안에 참여한 주요 이론가 마부브 울 하크(Mahbub ul Haq)가 문화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있었으며, 필자 또한 유엔개발계획에서 여러 연구자와 함께 이 지수 개발에 참여했다.

달라지는 어휘 간 차이도 함께 논의되었다.

아이카와 노리코와 문화분과 프로그램 사무관들의 직원회의에서 마침내 ‘무형 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유네스코가 이 분야에서 발전시킬 대상을 가리키는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결정이 나왔다. 우리는 모두 이 용어가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고, ‘무형’이라는 표현이 가뜩이나 매우 복잡하고 다의성인 ‘문화’라는 말에 또다시 다의성을 보탬으로써, ‘유산(heritage)’은 많은 언어권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용어는 사고와 관습의 흐름에 내재된 창의성, 물질문화유산과의 연계성, 공동체의 가치 인식, 문화를 상상하고 만들어 낼 수 있는 인류 공통의 능력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발견성(heuristic)을 제공했다.

무형문화유산이라는 용어는 담아내야 할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의미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이 표현에 함축된 의미가 모든 언어 및 문화의 넓이와 폭을 아우를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기를 희망했다. 또한 추후 작업을 통해 한층 더 이론과 방법을 토대로 한 연구로 더욱 엄밀한 명시성의 의미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도 고려했다. 그 결과 이 용어는 협약에서 처음 소개되자마자 정치 성격의 유리 감옥에 갇혔으며, 그 속에 담긴 모호하거나 모순된 부분들은 정치·조직의 절차를 통해서만 관리되고 있다.

문화 지표와 무형유산을 다룬 각종 회의는 필자 개인에게 유네스코 문화 프로그램에서 피한 문화 관점의 전환을 한층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따라 1998년 총회를 위해 작성된 문화분과 브로슈어에서 필자는 문화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나뉠대로 서술했다.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고, 혼합하고, 서로 주고받는 여러 의미의 지속된 흐름이다. 이것은 우리가 문화유산을 건설하고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준다. 친족, 공동체, 언어집단, 민족국가, 인류 자체와의 유대를 인지시켜 준다. 우리가 사색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문화로 인해 서로 간의 차이를 전쟁과 극단주의의 깃발로 바꿀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문화는 결코 당연시되어서는 안 되며, 신중을 기해 바람직한 성과 형태로 빚어져야 한다. (...)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게 접촉하고 있는 지금 그들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유산을 보전할 수 있을까? 수많은 우리 문화가 상호작용하는 세계에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sup>14)</sup>

14) 유네스코, 1998, “직물짜기에서 웹사이트까지: 유네스코, 문화를 기념하다(From Weaving to Websites: UNESCO celebrates culture)”, 문화분과 프로그램 브로슈어, 1998년 유네스코 총회.

아이카와 노리코 편집으로 브로슈어에 실린 ‘자기표현 양식: 무형유산(Forms of self-expression: the intangible heritage)’이라는 제하의 섹션에서도 일부를 인용해 본다. “(...) 세계 문화유산에는 구전 전통, 언어, 음악, 춤, 공연예술, 공예, 관습 등도 있다. (...) 유네스코는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 표현 양식의 보전에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확장된 이 프로그램에는 새롭게 가속도가 붙고 있다...”<sup>15)</sup>

### 무형유산의 활동 정의: 인권, 문화영역, 지역기관

마쓰우라 고이치로(Koichiro Matsuura)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2000~2006)은 취임 직후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선정했다. 그는 임기 첫 해에 ‘무형문화유산-활동 정의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이 회의는 국제법 체제로 보호해야 할 무형유산의 범위와 요소를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회의에서 필자는 기초문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토리노 회의의 발표에서 필자는 유산이라는 개념이 유물이나 지식, 관습과 연관된 사람들의 인식에 의해 형성되는 의미들로 구성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다. 법률 제정이 무형유산에서 중요하고도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며, 무형유산은 사람들의 활동으로 존재하고 유지된다는 의미에서 물질유산과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점을 근거로 무형유산은 기술, 촉진 요소, 생산물, 의미, 영향, 경제성 가치로 이루어진 창조 과정으로 간주해야 한다면서 이 각각의 요소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무형유산의 보호 장치는 과거로부터 매우 귀중한 법령을 남기면서 이것이 지속되어야 각 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게끔 이러한 창조 과정의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법률 수단이 왜 반드시 필요하냐는 질문에 대해 필자가 제시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는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1) 인간의 창작물은 중시해야 할 대상이다. 2) 인간 창작물의 다양성은 인류에게 중요하다.

15) 위의 글: 10.

2. 특정 유형의 무형유산을 범 세계 차원에서 인정하기 위해서다.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 1) 모든 세계인이 그러한 유산의 보호에 이해관계가 있다.
- 2) 여러 국가와 집단이 그들의 유산을 범 세계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에 따라 '소수의 자랑거리가 모두의 자랑거리'가 된다.<sup>16)</sup>
3. 지역, 민족, 문화,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4. 시장과 소비자운동이 개인주의를 역설하는 이 시대에 사회 협력을 가능케 해 준다.
5. 어떤 역사 전통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욕구 심리와 관련해 역사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6. 즐거움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다.

파워포인트 발표에서는 건설한 이론 기반을 갖추고 있고, 새로운 국제법 체제 마련에 타 국가기관이나 국제기관<sup>17)</sup>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유네스코가 다뤄 볼 수 있는 무형유산의 영역으로 1) 사회 화합의 관습 2) 구전전통 3) 축제행사 4) 자연과 우주에 대한 신앙 등을 제안했다.

토리노 회의에서 미국 인류학자 피터 세이텔(Peter Seitel)은 무형유산 보호에서 정식 파트너이자 전문가로서 전통유산 관리자들의 중심 역할을 강조했으며, 전문 기술과 전통 전승에 의식이 있는 창작자로서 더 크게 인정받아야 할 전통 보유자들을 조명했다. 그는 또한 무형유산이 여러 문화가 뒤섞인 혼성체일 수도 있고 식민통치나 여성 활동과 같이 다른 기준에 근거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무형유산의 개념 범위를 확장했다.

이쯤에서 바로 이 테마가 '여성과 무형문화유산'을 주제로 뒤이어 개최된 또 다른 유네스코 회의에서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무렵 상당수의 인류학 연구는 문화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 다시 한 번 관심을 촉구했고, 특히 사회 관습과 의례에서 여성이 주역을 담당했음을 보여 주었다. 매릴린 스트래던(Marilyn Strathern)은 저명한 그녀의 저서 『성(性)의 선물(The Gender of the Gift)』에서 여성의 노동 및 폭넓은 네트워크가 의례행사에서, 사회관계를 통한 유물 및 다른 형태의 무형유산의 가치 구축

에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sup>18)</sup> 여성은 수동 '전통 보유자', 즉 단순히 무형유산의 '전승' 기능만을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중대한 역설'에 직면해 있는데 이 용어는 아드리아나 곤살레스 마테오스(Adriana Gonzalez Mateos)가 토리노 회의에서 발표한 글에서 사용한 것으로, 그 일부를 인용해 본다.<sup>19)</sup> "그들은 전통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근대화를 해방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여긴다. (...) 반면에 여성을 그러한 속박에 묶어 두기 위한 좀 더 미묘한 전략은 전통의 수호자라는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토리노 회의에 이어 브라질에서도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도 참석자들은 지역 공동체들과의 협의 아래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 정책의 맥락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되새겼다.

2002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용어 관련 전문가회의에서 필자는 토론을 시작하면서 어떤 맥락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해야 하는냐는 문제를 간략히 개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과학에서 문화와 정치 변화에 관한 한 세기 동안의 논의 내용을 협약을 위한 맥락으로 압축해야 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주요 사안으로 강조한 것은 문화 전승 공동체와 지역 주체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는 점,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창출 및 재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보호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야 한다는 점이었다. 긴급히 요구되는 정치·종교의 관용 보장을 비롯해 법 제정과 관련된 사회 상호작용에 유념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 역설했다. 인류학자로서 필자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 사항이 역점을 인간 행위자에 둬으로써 문화의 실체화를 막는 것이라고 주장, 이 점에서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한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ion)의 동료 학자들과 의견을 함께했다. 이에 따라 진정성(authenticity)은 앞서 물질문화유산에 속한 것과 달리 새로운 대상으로 강조점을 옮기게 되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전문가회의에 함께 참석한 키아라 보르톨로토(Chiara Bortolotto)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다.<sup>20)</sup>

이 회의에서 안토니우 아우구스투 아란테스(Antonio Augusto Arantes)는 무형유산이 단순히 다른 목적을 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로 사람들의 삶의 자원이기 때문에 어떤 유산을 보호하고 유산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정하는 것도 해당 공동체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몇 명은 지역 공동

16) 이는 필자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문화분과 사무총장보 자격으로 문화유적지를 보러 갔을 때 한 인식이다.  
 17) 필자는 문화분과 사무총장보로서 문화 관련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여타 국제기관들과의 교류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재산 측면에서 문화를 규정하기 시작한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세계 무역기구(WTO)가 중심이 되었다. 예측할 수 있듯이 수많은 개념과 제도의 한계에 관한 논의가 뒤따랐다.

18) 매릴린 스트래던, 1989, 『성(性)의 선물』, 런던: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 아드리아나 곤살레스 마테오스, 2003, "뉴욕의 멕시코 이주민 여성과 그들의 문화유산 근대화가 지닌 역설 (Mexican Women Migrants in New York and the Paradox of Modernizing Their Cultural Heritage)", "여성과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유네스코 회의 기고문.  
 20) 키아라 보르톨로토, 2010.

체의 문화 자원을 외부인들이 도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는데 특히 라틴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일부 토착민 공동체에서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

수전 라이트(Susan Wright)는 이후 유네스코의 여러 회의에서 반복 논의된 중요한 문제, 즉 특정 사례에서 무형유산을 정의할 권한은 누구에게 가야 하는냐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흔히 문화 ‘문지기’, 다시 말해 공동체가 지정하거나 스스로 나선 리더로서 지역문화를 보호하거나 변화를 억제하여 긍정 또는 부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에 관한 인류학 관점의 논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 우리는 어떤 국제법 체계든 문화의 실천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데 다 함께 동의했다.

이에 따라서 용어해설집 작성에서 이 회의에 참석한 인류학자들은 고정되고 출처도 알 수 없고 자기 정당화된 추상의 실체로 정의되는 ‘문화’ 대신 좀 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를 적극… 재생산하고 전수하고 변형하고 창조하고 형성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정의되는 ‘문화 전승자(culture-bearers)’ 같은 용어가 그 예였다. 이는 곧 사람들을 문화유산 관습의 활발한 ‘창조자(creators)’, ‘연행자(practitioners)’, ‘관리자(custodians)’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창조자’, ‘연행자’와 문화공동체 간의 관계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용어집에서 ‘공동체(community)’는 ‘스스로 부여한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정의되었다. 인류학자들을 중심으로 회의 참석자 전원이 유네스코의 ‘다중 충성(multiple allegiances)’ 관점에 따라 개인이 동시에 하나 이상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후에 이 관점은 다문화주의에서의 단일 귀속(adscription)이라는 좁은 정치성의 관점을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무효화되었다.

‘문화 공동체(cultural community)’는 ‘자체 문화나 문화 디자인, 또는 보편 문화의 변형을 통해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되는 공동체’로 정의됐다. 또한 ‘가능한 확대 개념의 하나로 국가가 문화 공동체일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소수민족만 무형유산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했으며, 이로써 1990년대 중반부터 유네스코의 문화 관련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제기된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토착 공동체(indigenous communities)’를 ‘자체 구성원들이 스스로를 특정 지역에서 발원했다고 여기는 공동체’라는 정의로 환영할 만한 설명도 있었는데 이 정의를 통해 ‘동일한 지역에 하나 이상의 토착 공동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배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내용도 추가로 명시되었다. 후자의 견해는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원주민들이 같은 지역에 정착해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의 환영을 받았다.

물질유산에 적용되는 체계를 무형유산에도 사용할 수 있느냐에 관한 이전의 여

러 논의에서 추출된 또 하나의 중요한 구분에 관해서는 회의 참석자 폴 쿠룩(Paul Kuruk)이 정확한 법률 해석을 제공했다. 법률 근거에 따라 무형유산 협약에서 ‘보존(conservation)’이나 ‘보전(protection)’이 아닌 ‘보호(safeguarding)’라는 용어가 우선권을 얻었다. 이는 곧 ‘무형문화유산이 지닌 여러 측면에 대한 감정, 기록, 보전, 증진, 전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한다는 부분을 특히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했다. 참으로 중요한 이 용어상 구분은 무형유산이 그 상징과 의미를 끊임없이 되찾기 위해 재현되고 연행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 용어는 무형유산을 물질유산과 차별화하면서 살아 있는(living) 유산으로 규정했다.

이 모든 숙의를 거친 끝에 무형유산과 그 구성 분야에 관한 다음과 같은 정의가 이 회의에서 승인되었다. ‘(i) 현 협약의 목적상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개인이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하며 인권, 공정성, 지속 가능성, 문화공동체 간 상호 존중 등 널리 수용된 원칙과 양립하는 관습·표상 및 그에 필요한 지식·기능·도구·물품·공예품·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환경과 역사의 존재 조건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계속성과 정체성을 지니도록 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한다. (ii) 위 (i)항에서 정의된 무형문화유산은 다음의 분야를 아우른다. 1) 구전전통, 2) 공연예술, 3) 사회적 관습, 의식 및 제전, 4) 자연에 대한 지식 및 관습.’

그렇지만 이 회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이 큰 논쟁을 일으켰다. 하나는 2003년 협약의 유산목록에 포함시키기 위한 모든 제안서의 여과 장치로 인권을 포함시키는 문제였다. 우리 인류학자들은 모두 이 내용이 무형유산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는 민족중심주의자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이 도처에서 나서서 여성 할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로서의 손 절단이나 기타 유사한 신체 절단, 돌팔매형, 심지어 여아 살해까지도 문화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세계문화발전위원회가 1995년 ‘우리의 창의적 다양성’ 보고서에서 ‘비관용 문화는 그들의 비관용 성격을 강화할 목적으로 문화에 대한 존중이라는 논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명시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논쟁을 야기한 또 다른 쟁점은 협약에 언어를 포함시키는 문제였다. 필자는 이 부분에 강한 반대 주장을 펼쳤다. 현장연구 경험을 통해— 그리고 자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국가의 외교대사들의 요청을 통해— 이 조치에 반대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몇 년 전 언어정책에 관한 국제 아프리카 회의에서 필자는 3개 국어 정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일부 아프

리카 친구, 대사, 유네스코 위원들을 놀라게 하고 다른 이들을 경악케 한 바 있다. 세계 강국과 민족주의 정부, 심지어 민족 집단들조차도 곧바로 이 제안을 짓밟아 버렸는데 이들은 여전히 모두 자신들의 언어만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측면에서 보면 비록 토리노 회의는 첫 번째 보호 대상 목록에서 언어를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후에 열린 협약 관련 회의에서 다시 언어가 포함되었다.

이 같은 용어 정의들이 신중하게 다루어졌음에도 이 용어집은 유네스코 내부에서 예비문서로 배포되기는 했으나 이 회의 보고자인 네덜란드 인류학자 빔 벤더스(Wim Wenders)와 유네스코 위원들 간의 오랜 논의가 있는 뒤까지도 유네스코 회원국 대표단들에게 공식 배포되지 못했다.

### 끊임없는 도전 과제

200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145개국이라는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국가가 무형유산보호협약을 채택했다. 이처럼 대성공이 가능하게 된 것은 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사무총장의 아낌없는 지원과 아이카와 노리코의 치열한 노력 덕분이었다. 그 자체로 이 협약은 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신흥 경제국들이 협약 제정 과정에서 전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유네스코 내 지정학상 균형에 나타난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변화와 더욱더 균형 잡힌 세계 구축에 이제 지역 민족들이 활발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지극히 중대한 인식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의 글과 정신에 남아 있는 미처 해결되지 못한 모호한 부분들은 초기부터 협약의 시행과 운영에서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용어 회의가 있은 후 유네스코 회원 당사국들은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제정과 관련된 여러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전문가에 대해 각국 정부만이 자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결정은 본 협약과 관련해 취해진 여타 조치들과 함께 1950년대 이래로 유네스코에서 국제 협약을 구축할 때 늘 취하던 방식을 바꿔 놓았다. 과거에는 모든 전통 문화권의 과학자, 철학자, 인문학자들이 협약의 작성 및 운영 과정에 늘 참여했다. 지금 이 과정을 되돌아보니 '규제 없는' 협약을 만들려는 시도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초 다른 수많은 공공생활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은 전체가 폄하되고 전문가들은 비판 받았으며, 사회과학은 정책 논의에서 의도로 배제되었다. 2002년 파리 세계 문화의 집(Maison des Cultures du Monde)에서 열린 회의에서 대표자들로부터 들은 말에 따르면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정부 대표들은 무형유산보

호협약에서 '표준'이나 '규범' 어느 것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 협약에서 보류된 모든 규제 규범은 이후 협약의 운영 과정에 하나하나 새로운 불균형이 스며들게 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커다란 아이러니는 관련 담론에서는 '문화 집단'을 본 협약의 주체로 끊임없이 지칭했지만 이들이 각종 토론에서 발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이러한 집단에 정부 관료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알고 있을 전문가들도 토론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규제 완화가 많은 국가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권력을 차지한 중재자들이 자기 잇속만 차리는 활동을 했으며, 실제로 이들은 자기 나라에서는 문화 수용·이용의 수직성 관행을 부활시키고 있다. 역량 있는 과학 기관이라면 지난 50년간 유네스코에서 그리했듯이 균형을 실어 주거나 공정한 협상을 위한 복잡한 절차 마련에 도움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2003년 협약의 운영 기구를 끝없이 개편하고 협약 기준과 운영의 세부 사항을 두고 임시변통용 투표를 하는 것으로는 이론이나 방법, 절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셰리프 카즈나다르(Cherif Khaznadar)가 조심스럽게 지적했듯이 2003년 협약의 운영 과정에서 많은 도전 과제가 언급되었다.<sup>21)</sup> 최근에 인류학자들은 중대한 이론상의 문제를 강조했다.<sup>22)</sup> 파리 세계문화의집에서 열린 제1회 무형문화유산 연구자 포럼에서는 무형유산보호협약과 관련된 연구 및 운영 문제를 논의했다.

문화 유폐(cultural imprisonment)는 마르크 오제(Marc Auge, 1998)가 지적했듯이 맹종(blindness)으로 이어지거나 프랑스 한림원(French Academy)의 아맹 말루프(Amin Malouf)가 발표한 저서 제목처럼 대량살상의 정체성(Les Identités Meurtrières)이라는 위협을 낳는다. 이 지면이 그러한 위협을 분석할 자리는 아니지만 유산 후보 협상에서 새로운 중재자들의 부상과 명시되지 않은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이라는 문제를 많은 사람이 뚜렷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재자들은 지역의 주체를 배제하고 규제되지 않은 집단 서열화를 야기해 각국 내에서나 협약관련 기관에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결과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의 일관성 및 대표목록이 다른 목록들과의 사이에서 지녀야 할 적절한 균형에 혼란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21) 카즈나다르, 2009.

22) 국제사회과학협의회 무형문화유산위원회(ISSC Commiss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12. "무형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기획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Planning Meeting on Research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멕시코 국립대학, www.crim.unam.mx/drupal에서 확인 가능.

## 결론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은 모든 부분이 부족함에도 다양한 주체가 그들의 표현 문화 유실 및 변형에 우려를 표명하고 협상하는 한편 그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행동에 나설 수 있게 해 준 토대 구축에 가장 중요하고 성공한 기적이었다는 개인 소견을 밝히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이 사업이 주요한 개념 및 실행 관련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그 적용 단계부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 협약이 수많은 다양한 민족으로부터 끌어낸 열정과 헌신은 말 많고 탈 많은 지금의 세계에서 어떠한 문화와 문화유산이야말로 가장 구속력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무형유산에 관해 전 세계가 함께 숙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작업은 대단히 흥미로운 과정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노동의 현장(travail de chantier)’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화 연행자, 문화 이해관계자, 정부, 과학자, 유네스코 위원들은 협약 적용의 엄격성과 타당성 및 효율성 담보에 책임—그리고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 이는 또한 유네스코 임직원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정부가 주장해 온 것과 달리 유네스코 임직원들은 프로그램 기술자 역할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 미묘한 절충, 마법같이 등장해서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딱 떨어지는 구절같이 겉으로 보이지 않는 이 모든 요소가 더 이상 협약 문건에 들어있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대표단들의 협상 공간에 쏟아져 들어와 불안한 갈등, 실체 없는 합의, 미완의 결정을 낳을 것이다.

한편 인류학자와 민속학자들은 이제 외부인으로 머물던 시간을 뒤로 하고 무형유산 분야의 실질 운영 관련 영역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세계 규모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아이디어와 전략의 흐름에 관해 이해의 깊이를 더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 때문이다. ‘참석자 의사결정’에 관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첫 번째 과제는 지금의 새로운 세계에서 갈수록 비계층화되는—또는 계층으로 변형되는—학문·정치 영향에서 타자 중심과 담론 성격인 인류학의 성향을 이해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 인류학자들이 생산하는 지식을 지금의 변화하는 세계에 어떻게 안착시킬 수 있는냐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인류학이라는 학문 측면의 성찰 능력 덕에 우리는 각자의 이론과 방법론을 빠르게 전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새로운 범 세계주의 환경에서 시공간의 재개념화 작업 과정에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문화와 그 화신들이 언제고 불을 붙일 수 있는 이 세계에서 인류학자들은 왕성한 성찰을 발휘해 인류의 전례 없는 시대를 위한 새로운 문화·사회 현실의 건설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인류학은 맹종 및 유패 문화에 반대하는 열린 관점과 차이가 아닌 공동 운명을 강조하는 범 세계주의 비전의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어느 새로운 시도가 그렇듯이 무형유산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굳건히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금의 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2003년 협약 제정을 위한 숙고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많은 정부·공무원·연구자·문화전승자들의 공동 의지였으며, 이 의지야말로 그토록 다양한 주체들이 이 협약 마련에 동의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적용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이 협약이 머나먼 오지와 극지까지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촉발해 낸 놀라운 열정이다.

협약이 지닌 이론·정치성 모순점들은 단 몇 년 만에 협약의 승인을 얻어 내기 위해 치러야 한 대가인지도 모른다. 유네스코는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 얼마 안 가 흔한 방식이 되었을 관행들을 따라가는데 급급했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수많은 논쟁, 작용, 갈등 등의 가능성에 직면하여 살아 있는 문화 관습을 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무슨 수든 써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협약을 완성하고 이후에 참여를 원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다시 만들어지고 재창조되고 다듬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지금이라면 요즘 전자 비디오게임에서 가상세계까지 퍼지고 있는 레이디언스(radiance, ‘광휘’) 같은 새로운 용어를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 지금 당장 어떤 일에 매진하는 상황인데 지식·기술 수단은 전혀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일단은 배를 먼저 띄워 놓은 다음에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배를 개조하는 것이 최선이다.

무형유산과 2003년 협약의 개념과 관련해 어떤 평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문화 집단, 학계, 정부 문화부처 안팎에서 이 개념이 끌어낸 풍부한 논쟁은 사실 세계가 이 같은 논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증명하고 있다.

## 참고문헌

- Augé, Marc. 1998. *Les Formes de l'Oublie*. Paris : Edition Payot et Rivages.
- Arizpe, Lourdes. 2001. *Cultural Heritage and Globalization*. Los Angeles: Getty Foundation.
- Arizpe, Lourdes. 2006. "The Intellectual History of Culture and Development Institutions"; in: Walton, Robert and Vijendra Rao (Eds.) 2009. *Culture and Public Action*. Palo Alto:Stanford University Press.
- Arizpe, Lourdes. 2011. *Compartir el patrimonio cultural Inmaterial: narrativas y representaciones*. México: Consejo Nacional para la Cultura y las Artes and Crim-Unam.
- Amescua. 2013.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pringer Briefs in Environment, Security, Development and Peace, vol. 6 (Heidelberg – Dordrecht – London – New York: Springer-Verlag, 2013).
- Arizpe, Lourdes. "Culture, Diversity and Heritage: Major Studies." *Springer Briefs on Pioneers in Science and Practice No. 11*. Subseries Texts and Protocols No. 6 (Heidelberg – New York – Dordrecht – London: Springer-Verlag). In press.
- Balandier, Georges. 2001. *Le Grand Système*. Paris : Librairie Arthème Fayard.
- Bortolotto, Chiara. 2010. "Il patrimonio immateriale e l'autenticità: una relazione indissolubile" in *La Rivista Folklorica*, no.1.
- Malouf, Amin. 2006. *Les Identites Meurtrieres*.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Basic Books.
- Khaznadar, Chérif. 2009. "Les Dangers qui guettent la Convention de 2003" dans *Le Patrimoine Culturel Immatériel à la Lumière de l'Extrême Orient*. Paris : Maison des Cultures du Monde. 13-46.
- Lévi-Strauss, Claude. 2011. *L'Antropologie face au Problèmes du Monde Moderne*. Paris : Editions du Seuil.
- UNESCO. 2001. Final Report. International Round Tabl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Working Definitions".
- UNESCO. 2002. Draft Report "Terminology and intangible heritage. Drafting of a glossary." Report draft submitted to participants. UNESCO. 2001. Final Report. International Round Table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Working Definitions".

## 무형유산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이삼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 2003년 무형유산보호협약의 성공

무형유산보호협약이 채택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었다. 2003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은 많은 국가가 무형유산 보호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이 협약은 채택 후 3년 만인 2006년에 루마니아가 협약을 비준, 서른 번째 협약 당사국이 됨으로써 발효되었다. 협약 발효 후 2008년까지는 협약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간위원회가 조직되고,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 지침이 마련되었다.

2009년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4차 정부간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목록 및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될 유산이 발표되었다. 당시 기준으로 이미 협약 당사국 수가 116개국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153개국을 넘어섰다. 유네스코 사상 이 협약 만큼 회원국들이 발 빠르게 참여하고 적극 참여해 비준한 협약은 일찍이 없었다.

이러한 성과는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과정 및 속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각국은 대표목록에 자국의 유산을 등재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지금까지 등재된 유산은 약 300종목에 이른다. 현재 88개 당사국이 대표목록 257종목, 긴급보호목록 31종목, 보호모범사례 10건을 등재했다.

이 협약은 또한 당사국 문화유산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